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계획 안내

1 추진 배경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신입생 및 재학생 등 대상자별 구체적 이수 요건 및 횟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2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2021. 2. 9.)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취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성인지 교육

- ①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사례)**
 - 성인지감수성및성인지감수성교육에대한이해
 - 양성평등및양성평등교육에대한이해
 - 가정학교(대학포함) 사회속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내용및방법
 - 성인지적관점을바탕으로한수업및생활지도, 학생및보호자상담방법
 - 디지털성범죄포함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3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대학원과정): 2회 이상 이수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학사과정): 4회 이상 이수

○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 2021.2.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
(※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2021.2.9.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 과정	구분		이수 횟수	비고
사범대학 학사과정	신입생	'21학년도 신입생부터	4	
	재학생	'21.8 ~ '22.2. 졸업예정자	-	
		'22.8. 졸업예정자부터	2	2021.1학기 포함 교원양성과정 이수 까지 3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신규선발자	'21학년도 선발자부터	2	
	기선발자	'21.8 ~ '22.2. 졸업예정자	-	
		'22.8. 졸업예정자부터	2	2021.1학기 포함 교원양성과정 이수 까지 3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대학원 교원양성 과정	신규선발자	'21학년도 선발자부터	2	수료 전까지 2회 모두 이수
	기선발자	'21.8. 수료예정자 및 '21.8. ~ '22.2. 졸업예정자	-	
		'22.2. 수료예정자부터, '22.8. 졸업예정자부터	2	2021.1학기 포함 교원양성과정 이수 까지 3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기수료생		-	'21.2.9. 이전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함

4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 성인지 교육 내용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을 포함하여야 이수 인정
 -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차시)
 -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2차시)
 -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3차시)
 -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차시)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방법

- 매년 인권센터 인권·성평등교육 1회 이수 + 특강 또는 온라인 교육 1회 이수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 본인의 졸업까지 남은 교원양성과정 기간별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횟수만큼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 획득 가능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내용 및 방법>

성인지 교육	차시	내용	이수방법	이수경로
교육 1회 이수	1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https://help.ms.snu.ac.kr/ (문의: 02-880-2428)
	2차시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특강 또는 온라인 교육	교원양성센터 추후 안내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